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83
----------	------

제출연월일: 2015. 11.
제출자: 중구청장

1.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2015.7.1.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함.

3. 근거법규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 원안동의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 미반영(의견서 붙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안에서 구성하는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도 남녀의 균등한 참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의견을 제시 받았음.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상 ‘위원회 구성시 여성비율 30%까지 확대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여성비율 30% 구성으로 지속적으로 현 비율 유지 필요 함.

마. 입법예고 : 2015. 10. 12 ~ 2015. 11. 2.(의견 없었음)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단수·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5A울산중구049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복지지원과	
	담당자명	문수아	전화번호 052-290-4493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복지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성별 영향 분석평가법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제정의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등에 대한 내용임.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의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의거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즉, 상위법의 시행령에 의거하여 위원회 설치 등이 이뤄지나, 「양성평등기본법」 제6조(다른법률과의관계)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본 이념에 맞아야하므로 위원회의 성별균형 참여가 필요함.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②항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의 구성비율을 규정하고 있어, 당 조례에서 구성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남녀의 균등한 참여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복지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상 ‘위원회 구성시 여성비율을 30%까지 확대’ 명시 ○ 현재 중구 생활보장위원회는 7(남) : 3(여)의 비율로 여성비율 30%임 ○ 지속적으로 현 비율 유지 필요 		
2015년 11월 03일			
복지지원과장			
분석평가책임관 귀하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83)

1. 의안명 :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1. 20.(금)
- 제출자 :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15. 11. 23.(월)
- 위원회심사 : 2015. 12. 10.(목)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김종경 복지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2015.7.1.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함

4. 근거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5. 검토보고(전문위원 강기환)

- 본 제정 조례안은
 -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